

한두환 수의사·변호사의 법률칼럼 - 수의사의 생활법률 (33)

인체용 전문의약품 취급



한 두 환
법무법인 송파
변호사
lawvet@naver.com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구입할 수 있는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동물에게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곤 한다.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동물에 대한 처방전에서 처방한 경우의 관련 법률의 규정 내용과 관련 판례 등을 통해 살펴보자.

동물용의약품과 전문의약품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 제 2조 제1항은 동물용의약품을 동물용으로만 사용함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이라고 정의하고 있

으며,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동물용의약품 품목등록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즉, 동물용의약품이란 동물용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의약품으로서 검역본부에 등록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반면 전문의약품이란 약사법 제2조에서 일반의약품이 아닌 의약품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일반의약품은 식약처장이 고시하는 의약품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인체용 전문의약품이란 식약처장이 일반의약품으로 고시하지 않은 의약품을 말한다.

김명의 수의사의 명동물병원에 반려견 순돌이를 데리고 이견주씨가 내원하였다. 순돌이는 결막염으로 진단되었고, 김명의 수의사는 순돌이에게 동물용의약품이 아닌 인체용 전문의약품으로서 점안용 항생제인 레보아인을 처방하였다.

이견주씨는 일반 약국에 방문하여 박조제 약사에게 김명의 수의사의 처방전을 제출하고 레보아인을 구입하였고, 이를 순돌이에게 투약하였다. 이와 같은 경우, 김명의 수의사와 박조제 약사의 행위에 대하여 관련 법률에는 규정이 있을까?

김명의 수의사는 레보아인 처방을 할 수 있는지

이와 같은 전문의약품은 수의사가 처방할 수 있을까?

약사법 제23조 제3항은 의사와 치과의사가 전문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수의사법 제12조는 수의사는 동물용의약품에 대해 처방전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관련 법률에 수의사가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처방하지 못한다라고 명시하는 조항은 없으나, 위의 규정들을 종합하면 수의사는 인체용 전문의약품은 처방할 수 없다고 해석된다.

또한 유사한 사례를 통하여도 사안을 비추어 볼 수 있겠다. 한의사 역시 약사법 제23조에서 전문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데,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인 리도케인을 취급한 사례에서, 해당 한의사는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이는 한의사가 리도케인을 처방한 것이 아니라 직접 투약한 경우였으나, 의사 또는 치과의사도 투약을 위해 처방을 하는 것이므로 한의사에게 리도케인을 처방할 권한이 없음을 전제로 한 판결이다.

김명의 수의사는 처벌을 받을까?

김명의 수의사는 인체용 전문의약품인 레보아인을 처방하였는데, 그렇다면 처벌이나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까?

우선 위의 한의사의 경우를 살펴보면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범위에서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한의사는 자신의 면허범위를 초과한 리도케인을 처방, 투약하였으므로 무면허 의료행위가 되어 처벌을 받은 것이다.

그런데 수의사가 전문의약품을 처방, 투약하는 경우는 수

의사의 면허 범위를 초과한 것이지만 동물을 상대로 한 것이므로 의료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전문의약품을 처방, 투약한 김명의 수의사가 의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약사법 제23조 제3항은 수의사에게 전문의약품을 처방하는 권한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약사법 제23조 제3항을 위반한 자는 약사법 제95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수의사가 전문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를 직접적으로 명시하는 처벌조항은 없으나, 위 약사법 규정에 대한 해석을 통해 처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박조제 약사의 경우

약사법 제50조 제2항은 약사로 하여금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이 있는 경우에만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도록 하고 있다. 수의사의 처방전은 전문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경우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김명의 수의사의 처방전으로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박조제 약사는 위 법률을 위반한 것이다. 그리고 이는 약사법 제95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법령의 미비

수의사와 관련한 법령이 많이 보완되고 있으나, 아직 의료법이나 약사법에 비해 입법이 미비한 점이 많고, 각 사례마다 적용되는 조항의 의미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도 많다. 또한 수의사와 관련하여서는 판례도 많이 부족한 실정으로서, 해석에 의존하여 사안을 예측할 수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이 아직 명확한 판례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가급적 그 규정의 의미를 보수적으로 해석하고 행동하는 것이 안전하게 수의사의 업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

